22.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년 2월 28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O 회부일자 : 2019년 3월 4일

○ 상정일자 :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년 3월 19일),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감사관 안광훈)

#### □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부교육감 당연직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O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부교육감을 선임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O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함

### 3. 검토보고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노인만)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정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O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 4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부교육감 으로 정함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10조에서,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 O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교육감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 4명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선임하도록 변경하고, 기타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의가 없음
- 다만, 내부위원(4명)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던 것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심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부교육감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대한 심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퇴직공무원의 협력기관 재취업 관련	○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회의 진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과 업무의 연속성 등을 위해 부교
부교육감의 부위원장 지정으로 인해 심	육감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정한
사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	것이며,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 5. 토론요지

O 없 음

## 6. 수정안요지

O 없 음

# 7. 심사결과

O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요지

O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O 없 음